의 안 번 호

1621

【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0. 4. 29.(금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5. 1.(금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5. 13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김영성)

가. 제안이유

- O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 근거 마련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
- O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공유물품의 대여기준(대여료, 대여 제한 및 변상) 신설(안 제11조의2)
-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 확대 : 10명 이내 → 15명 이내
 (안 제14조제1항)
- O 당연직 위원에 공유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추가(안 제14조제3항)
-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다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법」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안 제11조의2에 공유물품 대여기준을 신설하고,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,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지방자치법」

- 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(생략)
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(생략)